|  |  |  |
| --- | --- | --- |
|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수매 감독 관리방법**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령 제25호<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수매 감독관리방법>이 2007년 7월 17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석 용권2007년 7월 25일**제1장 총 칙****제1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결을 촉진하고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량을 전액 수매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전력감독관리조례> 및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을 의미한다.전항에서 지칭한 바이오매스는 농촌폐기물 직접 연소 발전, 농/임업 폐기물 기화발전, 쓰레기 소각발전, 쓰레기 매립발전, 메탄가스 발전을 포함한다.**제3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산하 파출기구(이하 “전력감독관리기구”로 약칭)는 본 방법에 의거하여 전력네트워크 기업이 전력네트워크 커버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 전기량을 전액 수매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제4조** 전력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유관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 건설, 생산 및 거래에 종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전력 감독관리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력네트워크 기업이 전력네트워크 커버범위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 전기량을 전액 수매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이에 협조 및 협력해야 한다.**제2장 감독관리 직책****제5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공정을 건설하는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성급 이상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부대전력네트워크 시설의 건설계획을 마련한 후 성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유관 부문의 비준을 받아 전력 감독관리기구에 보고 및 비안해야 한다.전력망 기업은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부대 전력네트워크 시설을 건설 또는 개조하고 기한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인입공정의 건설, 시험테스트, 검수 및 투입사용을 완료하며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유니트의 전력송출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와 전력네트워크 전력망 연결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 전력망 연결은 국가가 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전력망 연결 기술표준에 부합하고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조직한 전력망 연결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전력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전력매매계약과 전력망 연결 관리 협의를 체결한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매매계약 및 전력망 연결 관리 협의에 관한 시범문건을 제정 및 발표한다.**제7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시 연결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제8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관리기구의 재생에너지 발전 우선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관리기구는 국가 유관 규정과 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인입을 보장하는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발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전력관리기구는 1일 계획방식 배치와 실시간 관리를 진행한다. 불가항력 또는 전력네트워크 안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전력네트워크 안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조직하여 인정한다.전력관리기구는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의 특징에 부합되고 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인입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작규칙을 제정하여 전력감독관리기구에 보고 및 비안한다. 복수 성 지역의 전력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작규칙은 복수 유역관리 및 물과 불의 Peak Load Shifting 효익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복수 성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인입을 실현해야 한다. **제9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의 안전운행 현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망 기업은 수전설비 및 기술지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호를 강화하고 전력의 신뢰성관리를 강화하며 설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설비가 원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액 인입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를 감소시켜야 한다. 전력망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설비 유지보호와 설비안전 보장 책임에 대한 경계기준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 유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제10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기량을 전량 수매하는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전력망 기업은 전력네트워크 범위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 전기량을 전량 수매해야 한다. 불가항력 또는 전력네트워크 안전의 안정에 위험이 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액 인입시킬 수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은 적시에 전액을 인입시킬 수 없는 지속시간, 예측 전기량, 구체적 원인 등을 서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액 인입시킬 수 없는 상황, 원인, 개선조치 등에 대하여 전력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이 개선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에 대하여 감독해야 한다. **제11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료 결산 현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전력망 기업은 국가가 심사하여 확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력가격, 보조금 기준과 전력매매계약에 따라 엄격하여 적시에 전액의 전기료와 보조금을 결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 인입 전력가격, 전기료 결산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자료를 기재 및 보존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전력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자료를 진실되고 완전하게 기재 및 보존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조치****제13조** 성급 전력망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매월 20일 이전에 소재지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전월의 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기량, 인입 전력가격과 전기료 결산현황을 보고 및 발송한다. 성급 전력망 기업은 또한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지현황 및 쿼터액 거래현황을 보고 발송해야 한다.전력감독관리기구는 유관 규정에 따라 전력기업의 보고 및 발송한 정보를 정리하고 사용한다.**제14조** 전력망 기업은 적시에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1）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기량 및 전력가격（2）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액 인입할 수 없는 지속시간, 예측되는 전기량, 구체적 원인 및 전력네트워크 기업의 개선조치 **제15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연료비율에 대하여 검사 및 인정을 진행한다.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연료 공급 등 유관 기업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데이터의 계량 및 통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1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전력네트워크 기업,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전력관리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피검사단위는 이에 협력해야 하고 검사 사항과 관련한 문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 그대로 유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전력관리기구가 보고 발송한 통계 데이터와 문건자료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대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와 전력 네트워크 전력망 연결과 관련하여 전력망 연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에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한다.전력망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간에 계약 이행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기업 및 전력관리기구가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 수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및 그에 관한 처리현황을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책임****제19조**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이 본 방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다.**제20조** 전력망 기업, 전력관리기구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전력망 기업은 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책임지고 명령해야 한다. 명령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제손실금액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공정을 건설하지 않거나 적시에 건설하지 않은 경우(2)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의 전력매매계약, 전력망 연결 관리협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3) 재생에너지 발전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4) 재생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5) 기타 전력망 기업 또는 전력관리기구의 사유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량을 전액 수매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전력망 기업은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제손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제21조** 전력기업이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전기료 결산, 재생에너지 발전 자료기재 및 보관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다.**제5장 부 칙****제22조** 중대형 수력발전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는 인입 가격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기량을 전액 연결시키는 수력발전 유니트는 전력시장의 유관 거래에 참여하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유관 규정을 집행한다.**제23조** 발전 소모열량 가운데 일반에너지원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일반 에너지원 발전 프로젝트로 간주하여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电网企业全额收购可再生能源****电量监管办法**国家电力监管委员会令第25号《电网企业全额收购可再生能源电量监管办法》已经2007年7月17日国家电力监管委员会主席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07年9月1日起施行。　　　　　　　　　　　　　　　　　 　　　　　　主　席　 尤权　　　　　　　　　　　　　　　　　　　　　　　　　　二〇〇七年七月二十五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可再生能源并网发电，规范电网企业全额收购可再生能源电量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电力监管条例》和国家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可再生能源发电是指水力发电、风力发电、生物质发电、太阳能发电、海洋能发电和地热能发电。　　前款所称生物质发电包括农林废弃物直接燃烧发电、农林废弃物气化发电、垃圾焚烧发电、垃圾填埋气发电、沼气发电。　　**第三条**　国家电力监管委员会及其派出机构（以下简称电力监管机构）依照本办法对电网企业全额收购其电网覆盖范围内可再生能源并网发电项目上网电量的情况实施监管。　　**第四条**　电力企业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规章的有关规定，从事可再生能源电力的建设、生产和交易，并依法接受电力监管机构的监管。电网企业全额收购其电网覆盖范围内可再生能源并网发电项目上网电量，可再生能源发电企业应当协助、配合。**第二章　监管职责**　　**第五条**　电力监管机构对电网企业建设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入工程的情况实施监管。　　省级以上电网企业应当制订可再生能源发电配套电网设施建设规划，经省级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批准后，报电力监管机构备案。　　电网企业应当按照规划建设或者改造可再生能源发电配套电网设施，按期完成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入工程的建设、调试、验收和投入使用，保证可再生能源并网发电机组电力送出的必要网络条件。　　**第六条**　电力监管机构对可再生能源发电机组与电网并网的情况实施监管。　　可再生能源发电机组并网应当符合国家规定的可再生能源电力并网技术标准，并通过电力监管机构组织的并网安全性评价。　　电网企业应当与可再生能源发电企业签订购售电合同和并网调度协议。国家电力监管委员会根据可再生能源发电的特点，制定并发布可再生能源发电的购售电合同和并网调度协议的示范文本。　　**第七条**　电力监管机构对电网企业为可再生能源发电及时提供上网服务的情况实施监管。　　**第八条**　电力监管机构对电力调度机构优先调度可再生能源发电的情况实施监管。　　电力调度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保证可再生能源发电全额上网的要求，编制发电调度计划并组织实施。电力调度机构进行日计划方式安排和实时调度，除因不可抗力或者有危及电网安全稳定的情形外，不得限制可再生能源发电出力。本办法所称危及电网安全稳定的情形，由电力监管机构组织认定。　　电力调度机构应当根据国家有关规定，制定符合可再生能源发电机组特性、保证可再生能源发电全额上网的具体操作规则，报电力监管机构备案。跨省跨区电力调度的具体操作规则，应当充分发挥跨流域调节和水火补偿错峰效益，跨省跨区实现可再生能源发电全额上网。　　**第九条**　电力监管机构对可再生能源并网发电安全运行的情况实施监管。　　电网企业应当加强输电设备和技术支持系统的维护，加强电力可靠性管理，保障设备安全，避免或者减少因设备原因导致可再生能源发电不能全额上网。　　电网企业和可再生能源发电企业设备维护和保障设备安全的责任分界点，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国家有关规定未明确的，由双方协商确定。　　**第十条**　电力监管机构对电网企业全额收购可再生能源发电上网电量的情况实施监管。　　电网企业应当全额收购其电网覆盖范围内可再生能源并网发电项目的上网电量。因不可抗力或者有危及电网安全稳定的情形，可再生能源发电未能全额上网的，电网企业应当及时将未能全额上网的持续时间、估计电量、具体原因等书面通知可再生能源发电企业。电网企业应当将可再生能源发电未能全额上网的情况、原因、改进措施等报电力监管机构，电力监管机构应当监督电网企业落实改进措施。　　**第十一条**　电力监管机构对可再生能源发电电费结算的情况实施监管。　　电网企业应当严格按照国家核定的可再生能源发电上网电价、补贴标准和购售电合同，及时、足额结算电费和补贴。可再生能源发电机组上网电价、电费结算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十二条**　电力监管机构对电力企业记载和保存可再生能源发电有关资料的情况实施监管。　　电力企业应当真实、完整地记载和保存可再生能源发电的有关资料。**第三章　监管措施**　　**第十三条**　省级电网企业和可再生能源发电企业应当于每月20日前向所在地电力监管机构报送上一月度可再生能源发电上网电量、上网电价和电费结算情况，省级电网企业应当同时报送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支情况和配额交易情况。　　电力监管机构按照有关规定整理、使用电力企业报送的信息。　　**第十四条**　电网企业应当及时向可再生能源发电企业披露下列信息：　　（一）可再生能源发电上网电量、电价；　　（二）可再生能源发电未能全额上网的持续时间、估计电量、具体原因和电网企业的改进措施。　　**第十五条**　电力监管机构对常规能源混合可再生能源发电项目的燃料比例进行检查、认定，常规能源混合可再生能源发电企业和燃料供应等相关企业应当予以配合。　　常规能源混合可再生能源发电企业应当做好常规能源混合可再生能源发电相关数据的计量和统计工作。　　**第十六条**　电力监管机构依法对电网企业、可再生能源发电企业、电力调度机构进行现场检查，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提供与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并如实回答有关问题。　　电力监管机构对电网企业、可再生能源发电企业、电力调度机构报送的统计数据和文件资料可以依法进行核查，对核查中发现的问题，应当责令限期改正。　　**第十七条**　可再生能源发电机组与电网并网，并网双方达不成协议，影响可再生能源电力交易正常进行的，电力监管机构应当进行协调；经协调仍不能达成协议的，由电力监管机构按照有关规定予以裁决。　　电网企业和可再生能源发电企业因履行合同发生争议，可以向电力监管机构申请调解。　　**第十八条**　电力监管机构对电力企业、电力调度机构违反国家有关全额收购可再生能源电量规定的行为及其处理情况，可以向社会公布。**第四章　法律责任**　　**第十九条**　电力监管机构工作人员未依照本办法履行监管职责的，依法追究其责任。　　**第二十条**　电网企业、电力调度机构有下列行为之一，造成可再生能源发电企业经济损失的，电网企业应当承担赔偿责任，并由电力监管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电力监管机构可以处以可再生能源发电企业经济损失额一倍以下的罚款：　　（一）违反规定未建设或者未及时建设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入工程的；　　（二）拒绝或者阻碍与可再生能源发电企业签订购售电合同、并网调度协议的；　　（三）未提供或者未及时提供可再生能源发电上网服务的；　　（四）未优先调度可再生能源发电的；　　（五）其它因电网企业或者电力调度机构原因造成未能全额收购可再生能源电量的情形。　　电网企业应当自电力监管机构认定可再生能源发电企业经济损失之日起15日内予以赔偿。　　**第二十一条**　电力企业未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电费结算、记载和保存可再生能源发电资料的，依法追究其责任。**第五章　附　则**　　**第二十二条**　除大中型水力发电外，可再生能源发电机组不参与上网竞价。电量全额上网的水力发电机组参与电力市场相关交易，执行国家电力监管委员会有关规定。　　**第二十三条**　发电消耗热量中常规能源超过规定比例的常规能源混合可再生能源发电项目，视同常规能源发电项目，不适用本办法。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07年9月1日起施行。 |